



제420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 김형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604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잔류성오염물질을 오염물질에 포함 등	3
2.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	11
3.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근거 신설	17
4. 개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환경감시관 규정 정비	22
5. 부칙	25
※ 참고자료	28
1.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28
2. 다이옥신의 특성과 영향	30
3. ‘행정처분 효과 승계’ 권익위 권고(‘23.5) 요약	31

I. 제안경위

2024년 11월 14일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및 유독물 등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고의로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같은 환경범죄 행위라도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적용받는 배출시설에서는 과징금 부과대상이었으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일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법률간 형평성 문제가 있고,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의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과 같이 위해성이 큼에도 이를 고의로 불법배출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등 법률의 미비점이 있음

이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또한, 그 밖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 환경부장관이 양도인의 처분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

Ⅲ. 검토의견

1. 잔류성오염물질을 오염물질에 포함 등

개정안은 ①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잔류성 오염물질,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②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배출시설 중 대기, 폐수, 폐기물, 가축분뇨, 토양 배출시설 등을 「환경범죄단속법」의 배출시설로 포함하며, ③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2015년 3월 25일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가. ~ 사. (생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u><신설></u>	아.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2. (생략)	2. (현행과 같음)
가. ~ 마. (생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하수도법」 제19조제2항,	바. -----

제39조제1항, 제43조제2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u>제25조제1항을 위 반하는 행위</u> 사. ~ 타. (생 략) <u><신 설></u> 3. (생 략) 가. ~ 마. (생 략) <u><신 설></u> <u><신 설></u>	----- ----- ----- -- <u>제25조제9항제4호 · 제5 호를</u> ----- 사. ~ 타. (현행과 같음) <u>파.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u> 3. (현행과 같음) 가. ~ 마. (현행과 같음) <u>바.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 설</u> <u>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 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 나목, 사목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배출시설</u>
--	--

「환경범죄단속법」 제2조¹⁾는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등 오염물

1) 「환경범죄단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 · 제2호에 따른 오수(汚水) · 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사.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原劑)
2. “불법배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불법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埋立)하는 행위
- 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 마.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 바. 「하수도법」 제19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2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25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 사.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위반하는 행위
- 아.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배출·누출하는 행위
-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차.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카.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3.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
-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4. “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 가.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
-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수입·판매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
-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 라. 「하수도법」 제45조제1항, 제53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 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
- 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사.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 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 자.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골재채취업
5. “불법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제3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로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 나. 제3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 다. 제4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 라. 제4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 마.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 또는 영업이 금지된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질과 불법배출 행위, 배출시설, 영업, 불법배출시설, 환경보호지역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정의규정을 바탕으로 동법 제12조²⁾는 특정대기유해물질, 특

-
- 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시설
6. “사업자”란 배출시설이나 불법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환경보호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역 또는 섬을 말한다.
-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
 -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자연유보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정도서(特定島嶼)
 -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마.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 바.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습지보호지역
 - 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
 - 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 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 차.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 카.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8. “환경법위반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다만, 시멘트·석탄·토사(土砂)·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粉體) 상태 물질을 운송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
- 2)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위반부과금액”이라 한다)과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을 더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반부과금액을 10억원 이내로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불법배출(제2조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행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특정대기유해물질
 -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
 -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
 - 라. 「하수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오수 및 분뇨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중 각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천500밀리그램 이상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거나 서류 또는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 중 어느 하나를 배출한 자

정수질유해물질, 지정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 유독물질을 불법배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매출액에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정화비용을 더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환경범죄단속법」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과 그 배출시설을 규율대상³⁾으로 하고 있지 않아 동일한 환경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44조제10항

나.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제4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제1항, 제46조의2제1항

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3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

3.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서류나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유독물질을 불법 배출한 자

4.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함으로써 같은 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중 어느 하나를 배출·누출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고의로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나.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횟수,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범주 등에 따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산출함에 있어 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15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 받은 경우 그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뺀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범죄 행위(불법배출 등)라도 관련 법령이 상이해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2조제1호4)에 따른 잔류성 오염물질을 「환경범죄단속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오염물질로 추가하고, 동법 제2조제2호5)의 배출시설을 「환경범죄단속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배출시설로 포함하며, 동법 제14조제3항6)을 위반하는 행위를 불법배출로 포함시켜 「환경범죄단속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또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7)에 따른

-
- 3) 동법 제15조의2(환경감시관)의 업무에는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허용 용도 외의 제조 등에 대한 벌칙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과 그 배출시설은 동법에 따른 정의규정이나 과징금의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4)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잔류성오염물질”이란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물질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5)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배출시설”이란 잔류성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6)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14조(배출허용기준) ①배출시설에서 배기가스 및 폐수 등으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령을 제·개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제15조제2호에 따라 설치되는 배출시설 중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경우 폐수로 배출되는 배출허용기준은 제외한다)을 지켜야 한다.
 -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거나 달성할 수 있는지, 잔류성오염물질을 줄이는 저감기술이 경제성과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배출시설등”이란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또는 기구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배출시설 중 대기, 폐수, 폐기물, 가축분뇨, 토양 배출시설 등을 「환경범죄단속법」의 배출시설로 포함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15년 3월 25일 시행) 사항을 반영⁸⁾하여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정의 규정 관련 개정안 주요 내용]

조항	개정사항
제2조제1호아목	○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상 잔류성오염물질도 ‘오염물질’에 포함시켜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에 따른 규제대상으로 추가
제2조제2호바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 제25조제1항이 제25조제9항제4호·제5호로 변경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의 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

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마.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의 소음·진동배출시설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사.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

아.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

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의 배출시설

차.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⑨ 공공처리시설 설치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2. 1.>

1.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2.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하는 행위
3.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행위
4.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 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때에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는 행위 또는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 처리의 공법상(工法上) 물을 섞어 야만 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7.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조항	개정사항
제2조제2호파목	○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상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행위(배출허용기준 위반)도 ‘불법배출’에 포함시켜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에 따른 규제대상으로 추가
제2조제3호바목	○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상 배출시설도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배출시설에 포함
제2조제3호사목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상 배출시설 중 「환경범죄단속법」에서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대기, 폐수, 폐기물, 가축분뇨, 토양 배출시설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추가

개정안은 불법배출행위 등 같은 환경범죄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고의적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

개정안은 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 비정상 운영행위(안 제12조제1항제1호), ② 통합허가 적용대상 배출시설 등에 부착된 측정기기 조작 행위⁹⁾(안 제12조제1항제2호라목), ③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안 제12조제1항제5호마목), ④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른 다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안 제12조제1항제6호) 등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시설이 과징금 대상에서 누락되어 이를 추가하며(안 제12조제1항제5호), ⑥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안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과징금) ① (생 략)	제12조(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불법배출(제2조제2호가목부터 <u>아목까지</u> 의	1.----- ----- ----- <u>아목까지 또는 타목의</u>

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은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행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고의로 측정기기를 훼손하는 행위, 조작 또는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동법 제31조제1항은 오염물질을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동법 제32조제1호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행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한자

가. ~ 라. (생 략)

2. (생 략)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
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
39조제1항, 제44조제10항

나. ~ 다. (생 략)

<신 설>

3.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6
조제2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
하여 서류나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인체급
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
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불
법배출한 자

4.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
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
39조제1항, 제44조제13항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
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
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1호

3. ----- 제23조
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고의로 위반하여 <u>허가나 변경허가</u>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가. ~ 라. (생략) <u><신설></u> <u><신설></u>	5. ----- ----- <u>허가나 변경허가 또는 승인이나 변경승인을</u>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u>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u>」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6. 「<u>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자
---	--

현행법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등을 적용받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만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환경범죄 행위라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소각로 등에서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이옥신

(참고자료2)의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보다 위해성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방지시설 등을 가동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서 규정¹⁰⁾하고 있어 현행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2조제2호타목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 배출시설의 비정상 운영행위¹¹⁾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상의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환

10) 다이옥신은 잔류성오염물질이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여,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배출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시설과 대체로 중복 적용되므로 현행 「환경범죄단속법」으로도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공기회석,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및 제2호(가치관 설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1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 비정상 운영행위의 내용

조항	비정상 운영행위 내용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 운영 - 방지시설 미가동 또는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제21조제1항제1호나목	-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 장치나 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제21조제1항제2호	○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행위 -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수질오염물질에 공정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오염되지 않은 물을 섞어 처리하는 행위 -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최종 방류구 통과 전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제21조제1항제3호	○ 그 밖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행위

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며, 위해성이 높은 다
이옥신 등에 대해서도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
으로 추가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 관련 개정안 주요 내용]

조 항	개정사항
제12조제1항 제1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 비정상 운영행위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포함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 비정상 운영행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의 비정상 운영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정상운 운영행위와 마찬가지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포함
제12조제1항 제2호가목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 반영 - 제44조제10항이 제44조제13항으로 변경
제12조제1항 제2호라목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측정기기 조작행위 등을 하면서 특정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행위를 과징금 대상으로 추가 -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행위(제20조제1항제1호) -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제20조제1항제2호) - 고의로 측정기기를 훼손하는 행위, 조작 또는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제20조제1항제3호·제4호) - 오염물질을 자가측정 또는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의무(제31조제1항)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 의무(제32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3호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삭제,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로 통합
제12조제1항 제5호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 위반행위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과 관련된 위반행위이므로 ‘승인’ 및 ‘변경승인’에 대한 표현을 추가

조항	개정사항
제12조제1항 제5호마목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통합관리사업장 배출시설 등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를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추가
제12조제1항 제6호	○ 다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신설 - 정당한 사유 없이 방지시설 등을 가동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개정안은 비정상 운영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한편, 환경오염시설 및 고위험 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국민건강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근거 신설

개정안은 불법배출시설 양도인 등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중지, 철거 또는 폐쇄 등 행정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승계하도록 하고, 처분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양수인 등에 행정 처분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양수인등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양수인등이 행정처분 전력 및 위반 사실을 양도인에게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과하며, 환경부장관은 양수자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4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자(이하 “양도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 등”이라 한다)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등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양수인 등이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양도인 등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양수인 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종류,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자에 대한 사용중지, 철거 또는 폐쇄 등의 행정처분의 효과는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불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배출시설에 대해 양수인등이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여 형식적 명의 변경 등을 통한 행정처분의 회피를 차단함으로써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음.

현행법은 양도인이 위법행위를 하고 행정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영업을 양도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행정처분 절차의 속행 규정에 대한 내용이 미비¹²⁾하고,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이 명확하지 않으며, 선의의 양수자 보호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12) 현행 「환경범죄단속법」상 승계기간을 설정하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는 없으나, 승계기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표본 조사결과(2023년 5월) 승계기간을 정하는 법률 48개 중 32개의 법률이 승계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승계 기간에 대한 규정 현황]

(단위 : 개)

구 분	기간의 기산점(개)	기간(개)	비고
유 (38)	처분일 (16)	1년간 (15)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등
		3년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처분 기간 끝난 날 (18)	1년간 (17)	공중위생관리법 등
		2년간 (1)	자연재해대책법
	처분 기간 동안 (4)		소음·진동관리법 등
무 (10)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골재채취법」 제45조 • 「농어촌정비법」 제90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2 • 「전기사업법」 제11조의12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4조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이에 개정안은 제재처분 절차의 속행 규정의 흠결을 보완하고 행정 처분의 효과 승계기간을 1년으로 명확히 하며, 선의의 양수자 보호규정을 마련하여 부당한 제재효과의 승계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5항¹³⁾에서도 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고, 처분 절차 진행 시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 절차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승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5조제2항¹⁴⁾에 따라 양수인등은 양도인등의 행정제재처분의 절차 진행 여부 및 처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5조(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①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인등"이라 한다)에게 제3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양수인등"이라 한다)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양수인등은 양도인등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을 사유로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의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 확인 요청 시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유사입법¹⁵⁾를 참고하여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5)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

4. 개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환경감시관 규정 정비

개정안은 「지하수법」, 「대기관리권역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감시관의 단속 및 예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환경감시관) ① (생략)	제15조의2(환경감시관) ① (현행과 같음)
1. ~ 18. (생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지하수법」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및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19. 「지하수법」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0조의2
20. ~ 29. (생략)	20. ~ 29. (현행과 같음)
3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	3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31. ~ 38. (생략)	31. ~ 38. (현행과 같음)
3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3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및 제60조
40. ~ 45. (생략)	40. ~ 45.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5조의2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환경감시관¹⁶⁾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4년 11월 현재 정원 기준 105명(현원 기준 84명)을 운영하고 있음.

다만, 개별법령의 과태료 또는 벌칙 등의 개정사항을 「환경범죄단속법」에 반영하지 못해, 환경감시관이 실제 단속 및 예방을 위한 활동 과정에서 과태료 또는 벌칙 사항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지하수법」 제40조의2¹⁷⁾에 따른 과태료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9년 4월 2일)됨에 따라 기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된 점을 고려하여 해당 법률을 「대기관리권

16) 환경감시관 운영 현황(2024년 11월 기준)

(단위: 명)

구분	조직 정원	조직 현원	환경감시관 현원
계	105	92	84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20	16	16
한강청 환경감시단	25	22	21
낙동강청 환경감시단	15	13	13
금강청 환경감시단	12	11	10
영산강청 환경감시단	11	10	7
원주청 환경감시과	7	6	5
대구청 환경감시과	8	8	8
전북청 환경감시팀	7	6	4

주1) 환경감시관 조건에 따른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관서에서 1년 미만 근무자 8명이 제외되어 조직현원과 환경감시관 현원에 차이가 있음.

주2) 환경감시관 조건 : (환경부) 3급~7급, 근무경력 1년이상 (지방환경관서) 4급~9급, 근무경력 1년이상

주3) 정원은 기준정원 기준임.

자료: 환경부

17) 「지하수법」 제40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5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의 벌칙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환경감시관 업무 관련 개정안 주요 내용]

법률명	조항	개정사항
「지하수법」	제40조의2 (과태료)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두지 아니한 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기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폐지 후 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

기존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감시관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한 업무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부여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5. 부칙

개정안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규정하고,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이나 과징금 규정 적용 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부칙안 제1조 및 제2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가중처벌이나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이나 과징금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u>

부칙안 제1조는 과징금 대상 확대 및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2조는 가중처벌이나 과징금 규정 적용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

다만, 부칙안 제1조의 시행일과 관련하여 과징금 대상 확대 외에 다

른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은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므로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 등은 규제대상의 준비기간 부여, 법적 안전성 확보, 하위법령 위임사항 정비 등을 고려¹⁸⁾할 때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¹⁹⁾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

18) 「대기환경보전법」 부칙<법률 제17797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및 제69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9까지,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 제9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4항·제7항·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74조, 제74조의2제3항제4호, 제75조, 제89조제11호·제12호, 제90조, 제91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94조제1항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제13호·제14호·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5조 (생략)

제6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제11조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0.12.29>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3. 발전소의 발전 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5.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6. 제조업의 배출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신설 2012.2.1, 2020.12.29>

1. 제26조에 따라 방지시설(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제3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36조에 따른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0.12.29>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

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부칙 안 제2조의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²⁰⁾를 고려하여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33

다. <개정 2012.2.1, 2012.5.23, 2013.8.6, 2019.1.15, 2020.3.24>

⑤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2.2.1>

⑥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35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 2012.5.23>

1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79호, 2016. 1. 27, 일부개정]의 경우 제38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등)를 한 경우로서 5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가 아닌 조업정지를 명하도록 하였는데, 부칙에서 시행일을 1년으로 규정한 바 있음.

2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 칙 <법률 제8010호, 2006.9.27> 제7조 (배출부과금 및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와 벌칙·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정 배경

-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매체별 환경관리에서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체계로의 전환 필요, 기존시설의 맞춤형 관리방안 도출 적용을 위해 법률제정 추진

제정 목적(법 제1조)

- 배출시설 등을 통합관리하고 사업장 여건에 맞는 최적의 환경관리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으로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

대상(법 제6조) 및 적용

- 환경영향이 큰 20개 업종의 대형사업장(1,300여개소, 전체의 1.3%)
- 공정이 단순한 업종부터 적용, 대상 업종을 연차적으로 확대

* 기존 시설은 업종별 적용일 후 4년 이내 허가받도록 유예 (법 부칙 제4조, 영 별표1)

차수	~'16	'17	'18	'19	'20	'21	'22	'23	'24	...	'27.6
1차(발전·증기·폐기물처리) 443개소	개 별 법 적 용	적용→ 허가 유예									
2차(철강·비철·유기화학) 268개소		적용→ 허가 유예									
3차(석유정제·비료·무기/정밀화학) 144개소		개 별 법 허 가 (사업장 희망시 통합허가 신청 가능)	적용→ 허가 유예								
4차(펄프·종이·기타종이·전자제품) 110개소			적용→ 허가 유예								
5차(플라스틱·섬유·알콜음료·도축/육류·자동차부품·반도체) 355개소			적용→ 허가 유예								
6차(시멘트제조) 11개소	개별법 적용								적 용 →	허 가 유 예	

*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개정(23.1)으로 시멘트제조업종 통합허가적용(23.7~, 유예기간 4년 적용은 동일)

사업장 맞춤형 허가

- 일부 대형사업장에 다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 맞춤형 관리 기준 설정을 위해 허가기준을 입체적으로 재편(법 제7조제1항)

* 별도의 허가로서, 6개 법률의 배출시설별 10종의 인허가 불필요(법 제10조)

<허가기준 변경내역>

(개별법의 허가기준)

- 배출허용기준 준수

(통합법의 허가기준)

- ① 허가배출기준 준수

- ②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

- ③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 및 사후대책 적정 수립

- ‘사람 건강 및 환경에 영향 최소화’를 위해 허가조건 부여(법 제6조제3항)

* 허가기준②의 준수여부 및 허가조건 부여를 위해 사업장의 공정·시설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 필요, **획일적인 조사·방법 지침으로는 맞춤형 관리 不可**

- 허가 결정시 허가검토 결과서와 허가명세서*를 발급(규칙 제7조)

* 준수의무인 허가조건 및 그 이유, 허가배출기준의 근거, 허가결정 이유 등 기재

허가배출기준

- 허가 또는 변경허가시 배출영향분석*을 통해 목표수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대배출기준*** 이하로 설정(법 제8조제1항)

* 배출시설에 의한 추가오염도와 기존오염도의 합(합)이 목표수준 초과하는지 여부 확인

** (지역)환경기준, 지자체 환경질 목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목표수준(법 제8조제2항)

***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적용 시 배출되는 농도범위의 상한값

과학적 환경관리

- 통합허가 과정에서 파악된 공정정보를 바탕으로 시설 운전조건과 오염배출의 통계적 상관관계 분석, 오염 과다배출 원인 분석·제시

* 정기 지도·점검을 1~3년에 1회 수준으로 완화 (규칙 제31조제2항)

□ 다이옥신(2,3,7,8-TCDD, CAS No. 1746-01-6)의 물질특성

- 무색 또는 흰색, 열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잘 분해되지 않음
- 지방에 잘 녹아 소변으로 잘 배설되지 않고, 축적되는 성질. 모유 및 우유에서도 검출
- 이성질체가 약 210종이 가능하며, 그 중 독성이 강한 것은 ‘사염화다이옥신(2,3,7,8-TCDD)’으로 알려짐

□ 다이옥신의 배출경로

- 플라스틱 등 염소 함유 유기화합물이 소각될 때 많이 발생
- 그 외 철·비철·화학물질·전력 생산, 운송분야 등 다양하게 배출
- 대기 중 다이옥신이 비와 함께 땅으로 떨어지고 채소, 풀에서 다이옥신이 축적, 채소·풀을 먹은 가축, 사람의 몸에서 다시 축적됨

□ 다이옥신의 인체영향

- 다이옥신 중독증상은 피부돌기, 가려움증 등 피부질환, 장기 노출 시에는 폐암, 심장질환, 운동신경 손상, 임신을 저하 및 기형 유발
- ※ 유엔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성 등급 1’로 분류

□ 다이옥신 사고현황

- 우크라이나 대선후보 000이 선거운동을 치르면서 얼굴에 종기가 나고 검게 변했는데 조사결과 다이옥신 중독으로 판명(‘04.12)
- 독일에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사료에 오염된 달걀이 네델란드, 영국에 수출되면서 ‘다이옥신 달걀’ 파문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11.1)

참고3

‘행정처분 효과 승계’ 권익위 권고(‘23.5) 요약

□ 제재처분 절차의 속행 규정의 흠결 상태 보완

- 양도인이 위반행위를 하고 행정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영업을 양도하는 폐단을 방지할 필요

⇒ (개정안 제14조제1항)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등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 행정처분 효과 승계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과잉행정 방지

-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있는 승계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과잉행정을 방지하고 행정처분 효과 승계 규정의 취지 달성

⇒ (개정안 제14조제1항)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승계

□ 선의의 양수자 보호 규정 마련으로 부당한 제재효과 승계 방지

-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한 「전기사업법」, 「골재채취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

⇒ (개정안 제14조제1항) 양수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선의의 양수자 보호 및 선·악의 입증의 편의성 제고 규정 마련

- 행정처분 전력 및 위반행위 사실을 양수자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편법 양도를 방지

⇒ (개정안 제14조제2항) 양수인 등이 행정처분의 진행, 이력이 있는지 양도인 등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양수인 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